

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매립공사를 착공하는 데 원고는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고,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아무런 보상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립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비용을 들여 관계 연구기관에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이고 현실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, 원고의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하여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간접일시보상을 하여 원고도 피고의 보상안에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, 피고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,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.

같은 취지의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불법행위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한편 원심은, 이 사건 방조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, 피고가 축조한 방조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, 거기에 공작물의 설치·보존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.

2.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판단

구 수산업법(1990. 8. 1.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아래에서도 같다)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나,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에 정한 권리를 가진 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고 위 법 제16조 제2항,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정을 거쳐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.

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, 원고는 면허어업을 받은 자로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의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위 법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, 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2항,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고, 피고에 대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(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다56468 판결 참조).